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이 선 화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소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연구회 의장



이 건 찬

KT 기술기획실 교향기술국 대리,
TTA 지적재산권연구회 위원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두번째로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 | | |
|----------------------------------|---------------------------------|
|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V. 일본 표준화기구(TTC,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
| II. 국제 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 VI. TTA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안) |
|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 VII. 결론 및 국내 대응방향 |
|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 |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의 논의에¹⁾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ETSI의 설립배경, 주요임무, 조직구성, 회원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그리고 EC(현 EU)차원의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대하여

1993년 EC 출범을 목표로 1986년 ‘전기통신서비스 및 기기의 공동시장 개발’에 관한 녹색(Green Paper)와 1988년 2월 실행계획(Action Program)이 발표되면서 1990년 말까지 EC 내에서 단말기를 완전 자유공급할 수 있게 합의함에 따라, 이를 비롯한 전기통신부문에서의 공통표준 제

정이 요구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유럽 전기통신주관청 회의인 CEPT(European Conference for Post and Telecommunications)의 CCH(Committee for Harmonization)의 감독하에 각국에서 독자적인 표준이 제정되고 있었고, CEPT가 주관청들의 모임인 관계로 실제적인 표준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공동표준제정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했다. 이에 1988년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라 함)가 설립되었고 표준화와 관련된 많은 임무들이 CEPT로 부터 이관되었다.

정관에 따른 ETSI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단일 유럽 전기통신시장 형성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작업분야는 전기통신분야, 전기통신과 정보기술의 공통영역, 전기통신과 방송의 공통영역 등이며, ETS(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ETS(Interim-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TBR(Technical Basis for Regulation)의 형태로 표준을 작성하며, 기술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회원은 정부(Administration), 정부기구(Administration Bodies), 국가표준화기구(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공중망운용자(Public Network Operator), 제조업자(Manufacturer), 사용자단체(User Group), 사설망서비스제공자(Private Service Provider), 연구기관(Research Bodies), 자문회사(Consultancy Companies) 등으로 구성되는데 제조업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TSI는 투표방식에 있어서 개인별 가중투표방식(Weighted Individual Voting)²⁾과 국가별 가중투표방식(Weighted National Voting)³⁾을 채택하고 있다. RoP(Rules of Procedure)의 규정

에 따라 표준의 작성, 승인, 구현 등에 관한 사항의 투표시에는 국가별 가중투표방식을 따르게 되나, 그 외의 많은 실제적인 결정들이 하부조직에서 개인별 가중투표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제조업자, 사용자들이⁴⁾ 다른 표준화기구들에 비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TSI는 설립초기 CEPT 작업그룹을 그대로 이관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략검토위원회(SRC: Strategic Review Committee)를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위원회(IPR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합동기술위원회(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ISDN 관리 및 협력위원회(IMCC: ISDN Management and Cooperation Committee), 과제자문위원회(PAC: Program Advisory Committee) 및 11개의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s)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TSI 본부는 남프랑스 니스 근처 Sophia Antipolis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법을 따르게 된다.

2. EC위원회(EC Commission) 차원의 지적재산권 정책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EC(현 EU) 위원회는 1992년 10월 ‘지적재산권과 표준화(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Standardization)’라는 제목으로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다.⁵⁾ 이 문서에서는 크게 표준화의 기본원칙,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원칙, 표준설정과정, 타 정책과의 관계 -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경쟁적 측면, 통상정책 측면 - 에서의 지적재산권 면허 활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C위원회는 표준화 전문기구가 아니라 EC국가들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권한을 가진 상위 권력기구라는 점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갈등관계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 관심 뿐만 아니라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시장 경쟁정책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유럽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관점에서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갈등 잠재성, 표준화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유인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표준화기구가 지적재산권이 걸린 대상이 표준화되기 전에 그 권리를 확인하고 권리 소유자와 협상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특허의 존재에 관하여 탐색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표준화기구나 지적재산권 소유자 양측에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준화작업시에는 이러한 원칙하에 진행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표준화기구에서 준수하도록 추천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표준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에 접근(access)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표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활용되어야 한다.(on fair and reasonable, non-discrimination terms) 이것은 표준화기구의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상황(circumstance of the use)이 고려될 수 있다.⁶⁾ 셋째, 사용자는 자유롭게 유럽내에서 표준을 따르는 제품의 제조와 제 3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된 표준을 따른 제품의 유럽 내 수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표준 채택전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를 확인하는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표준화기구가 적절한 탐색, 적절한 표준규격 발행, 그리고 적절한 공식조사를 하는 경우에 달성될 수 있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표준에의 필수 지적재산권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로열티를 결정하는 중재 제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EC위원회는 필수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 가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표준화 작업중인 주체가 자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적절한 시점에서 면허의 공여 여부를 표현하여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면허를 공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표준화와 관련된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공정, 합리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면허를 허여하여야 한다. 셋째, 표준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면허를 부여하는 모든 협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⁷⁾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도 표준과 관련하여 표준에 어떠한 ‘구속적 특성(binding character)’을 부여하기 이전에 다음의 세 가지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표준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견해에 기초한 합의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표준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표준의 지역적 활용 범위는 TBTA 협정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통신주관청이나 주요 통신운용자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표준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

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처리에 있어 표준화기구가 표준화 작업 초기에 지적재산권의 존재를 확인하여 권리소유자와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떤 표준이 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경우 혹은 TBTA(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하 무역을 방해하는 경우는 표준승인을 보류하거나 혹은 이미 제정된 표준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특정표준에 대해서는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표준화기구가 표준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는데 계속 실패한다면 EC 법률하에서 표준화기구 자체의 지위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ETSI의 비회원, 비서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다른 표준화기구들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지침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법적인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소유자나 개별 표준화기구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통례이다.

3. ETSI 지적재산권 정책

ETSI는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1993년 3월 'ETSI 지적재산권 정책 및 협약서(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and Undertaking)'를 잠정확정하고 회원국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

갔다⁸⁾. ETSI 지적재산권 정책 및 협약서는 각각 1993년 4월 1일, 1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이후 최소한 2년간은 ETSI 회원은 물론⁹⁾, 회원 이외의 협약서에 서명한 자들에게 적용되게 된다. ETSI 표준적용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이면 ETSI 회원가입과는 별도로 협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¹⁰⁾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은 경제권역화에 따른 전형으로서 역내 국가(회원 혹은 서명자)들 간에 보유기술의 공동사용을 추구하여 효율적인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양면적, 배타적 전략을 펴고 있다. 동 정책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표준화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공적 표준화의 필요성과 지적재산권자의 사적권리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데 ETSI가 직접 개입하여 중재하고 표준화의 일반원칙에 따라 표준이 널리 이용되게 한다는 기본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잠정 시행중인 지적재산권 정책에는 ETSI 지적재산권 정책목표, 기본절차, 면허허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등이 간략히 규정되어 있으며(본문 14개 조항), 협약서에는 실질적인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서명자의 권리와 의무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본문 27개 조항).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다른 기구와는 좀 다른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회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협약서에 서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이외에는 표준화에 관한 서류의 복사, 배포도 금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간단한 원칙만을 정하는 타기구와는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고려하여 세세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심지

어 ETSI 자체의 개입도 명시하고 있다. 정책 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타기구들이 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만을 다루는데 반해 ETSI는 상표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은 물론 일부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 분야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ETSI 지적재산권 정책에 따르면,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기술총회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럽전기통신 부문의 기술적 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해결방법을 기초로 한다. 이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은 ETSI 회원 및 ETSI 표준을 따르는 기타 단체가 표준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표준을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데 투자된 비용이 무용 또는 낭비(매몰비용화)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아울러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은 공중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사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ETSI 회원이든 아니든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에게 표준의 구현과정에서 그들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adequate and fair reward)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ETSI는 표준화의 일반 원칙에 따라 표준이 잠재적 이용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이용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에서 규정하는 ‘표준’이라 함은 표준에 포함되는 선택사항들이나 개정판을 포함하여 ETSI가 채택하는 모든 표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ETS, I-ETS, NETs의 일부, ETS, I-ETS, TBR을 근거로 작성되는 CTRs은 물론 이들의 모든 초안이 포함되며, 모든 회원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규격이 포함된다. 그러나 NETs나 CTRs에서 참조될 수도 있는 ETSI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표준들은 제외된다. 또한 ETSI는 필수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적’이라 함은 ‘표준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행태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지적재산권의 침해없이 표준에 부합하는 설비 및 방법(Methods)의 제조, 판매, 대여,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용하는 것 등이 상업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술적 이유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이 오직 어떤 지적재산권들을 침해하는 기술적 해결에 의해서만 구현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모든 지적재산권들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많은 경우에 이 필수지적재산권의 취급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서 서명자는 자신이 인지한 잠재적 필수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ETSI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의 표준화를 위한 ETSI의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어떤 지적재산권이 표준의 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이에 대한 면허를 회원 상호간에, 그리고 제 3자에게 하여야도록 ETSI가 개입하는 것이다. 표준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특정표준화 대상과 지적재산권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여 특정지적재산권이 ETSI의 표준화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면, ETSI 사무국장은 즉시 권리소유자에게 표준적용지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면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하에(on fair and reasonable, non-discrimination terms) 허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을 ETSI 회원이 소유한 경우이거나 혹은 협약서에 서명한 자가 소유한 경우라면 협약서 조건에 따라 면허가 허여되게

된다.¹¹⁾

만약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표준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허를 허여할 의사가 없다고 ETSI에 통보한 경우에는 ETSI 총회가 그 표준안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당해 지적재산권에 의해 봉쇄되지 않고 ETSI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실현가능한 표준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대체기술이 없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재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공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ETSI 총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며 이로써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당해 표준화 작업은 결국 중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에서는 ETSI 또는 ETSI 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준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을 ETSI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 및 제휴사에게는 무료이용,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복제본을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본 지적재산권 정책은 총회의 개인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를 얻고 국가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로 확정되지 않는 한은 2년의 최소시행기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되며, 그 사이 본 정책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인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4. ETSI 지적재산권 정책에 따른 협약서

전술했듯이 협약서에는 협약서에 서명한 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협약서의 구성은 서문과 협약서 내용, 그리고 실제 협약서 서류양식과 부록 - 개념정의, 피고용자확인서 서식, 표준적용지역 국가목록 - 으로 되어 있다. 서문에는 서명자가 ETSI의 목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며, 일정한 면허를 허여하고 ETSI 목표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의무를 기꺼이 수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 제2조에 따르면 서명자는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요구시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필수지적재산권의 면허를 허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면허허여는 표준적용지역 어디에서든지 제조; 제조된 설비의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처분; 제조된 설비의 수선, 사용 또는 운용; 표준적용지역에서의 표준에 따른 방법의 사용까지를 포함한다. 이때 면허의 허여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적재산권의 전 기간을 통하여 허여되어야 하고,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¹²⁾

그러나 협약서 제 10조에 의하여 설비 및 방법과 관련된 조달계약에서 서명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급을 위한 경우 혹은 표준적용지역 밖에서의 제조를 위한 경우는 면허의무의 책임이 없다.

동시에 서명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i) 명백한 방법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존재 확인(identity)과 ii) 해당 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표준인 경우 표준을 위한 면허의 허여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는 ETSI 기술총회가 그들의 작업계획에 해당 표준안 작성의 정확한 범위, 일정 및 완료목표일과 함께 표준의 준비를 위하여 동 항목의 작업에 착수기로 결정한 일자로 부터 18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¹³⁾ 서명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허를 허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ETSI에 이미 통보했다라도 기술총회에서 표준구현시 실현 및 이용가능한 차선의 기술이 없다고 결정이 난 경우라면 ETSI 사무국장은 서명자에게 다시 한번 재고요청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절하려는 경우 사무국장의 재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사유를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협약서 제 5조에 의하여 서명자들은 표준 또는 표준에 상응하는 목적을 갖는 인정된 기구(ETSI, CCITT 및 CCIR 포함)에 의해 정식으로 제안된 표준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호 허여를 하여야 한다. 즉, 협약서에 서명한 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면허를 허여할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조건하에 서명자 서로간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허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의 면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허여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면허허여 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이미 허여했던 모든 면허도 90일간의 고시를 통하여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협약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협약서 제 6조에 의하여 서명자는 자신이 인지한 잠재적 필수지적재산권들의 존재를 부당한 지체 없이 즉시 성실히 ETSI에 공개할 책임이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면허허여시 면허사용의 최고사용율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명자는 협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모든 협상에 성실히 응할 책임이 있으며, 협상기간 중 법적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이 있음을 알리고 3개월 이내에 해결 노력을 해야 하며,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3명의 중재위원회에 의한 특별중재로서 해결한다. 중재 과정에서, 협약서는 모든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다 표준화기구와 달리 경우에 따라 ETSI 사무국측이 중재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약서에서는 서명자 자신이 제 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면허허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점, 협약서상 서명자가 지적재산권의 검색 또는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는 점, 서명자는 ETSI에 의해 출판되는 모든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권을 ETSI에 양도한다는 점, 면허허여자가 회원을 탈퇴하여도 이미 허여된 권리는 유효하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책과 마찬가지로 협약서의 경우도 그 구성, 유효성 및 이행은 프랑스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ETSI 회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이 그러한 법규정들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자국의 법규 및 규정을 위배하거나, 자국에 적용가능한 초국가적 법규와 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협약서에 의해서 의무화되지는 않는다.

5. ETSI 지적재산권 정책(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¹⁴⁾ 전문

<ETSI 지적재산권 정책>

1. 서문

ETSI 총회는 아래와 같은 잠정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였다.

2. 정책목표

2.1 표준은 기술총회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럽 전기통신분야의 기술적 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해결방법을 기초로 한다. 이 목표 추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ETSI 지적재산권정책은 ETSI, 회원 및 ETSI표준을 적용하는 기타의 조직체가 표준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표준을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낭비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ETSI 지적재산권정책은 전기통신영역에서 공공적 이용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과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2.2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들은 ETSI 회원 및 그의 제휴사든 제3자든지 간에 그들의 지적재산권이 표준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2.3 ETSI는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된 자신의 활동이 표준화의 일반원칙에 따라 잠재적 이용자들이 표준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지적재산권 협약

3.1 ETSI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적재산권 협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기존 ETSI 회원들은 ETSI의 서명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동협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2 상기 제3.1조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협약서는 서명되면 모든 ETSI 표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3 표준적용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는 ETSI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도 언제든지 지적재산권협약서와 유사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약서에 대한 서명을 하기 위하여 ETSI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ETSI는 이러한 신청과 서명을 거절할 수 있다.

4.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확인절차

4.1 당사자가 아닌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표준과 관련된 필수지적재산권이 ETSI의 주의를 끌게되는 경우에 ETSI사무국장은 즉시 당해소유자에게 서명된 협약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협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

여 표준적용지역내 모든 국가의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그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회할 수 없는 면허를 허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제조, 이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면허자 자신의 설계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주문형 부품 및 하위시스템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었던 권리가 포함됨
- 표준적용지역에서 제조장비의 판매, 임대 또는 기타의 처분
- 어디에서든지 제조장비의 수리, 사용 또는 운용 그리고
- 표준적용지역에서 방법의 사용

4.2 EC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ETSI는 우선적으로 특정표준 혹은 동종의 표준들에 대하여 제안된 표준에 필수적일 수 있거나 필수적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하고 있는가 또는 존재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조사와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가능한 면허허여조건을 포함한 조사를 충분하고도 시의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이는 조사착수전에 EC집행위원회와 함께 작성한 세부 합의서에 따라 조사에 소요되는 합당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EC집행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5. ETSI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

ETSI는 회원이건 아니건 모든 당사자에게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및 수정사항의 사본을 보낸다.

6. 비밀성

위원회의 진행사항은 명백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고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정보는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공중 열람이 가능하다.

- 정보가 서면이나 기타 유형으로 존재하고
- 정보가 제출시에 비밀취급 표시가 확인되며
- 정보가 비밀인 상태로 TC나 STC의 의장에게 최초로 제출되어 접수되는 경우

표준에 포함되는 비밀정보는 그 표준이 간행된 날로부터 ETSI와 그의 회원에게 비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7. ETSI의 지적재산권 소유

7.1 ETSI 또는 ETSI의 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준에 관한 문서와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ETSI가 소유한다. 다만, ETSI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간행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이 적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7.2 표준에 관한 문서와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한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ETSI는 회원이 아닌 기관으로부터는 오직 ETSI의 피고용자나 후원자에 의하여 생성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만을 추구한다.

7.3 ETSI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은 ETSI가 당사자로서 ETSI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ETSI는 부속서A에 상술된 것과 동등한 협약에 서명한 비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기 제7.1조에 언급된 것 이외에 ETSI가 소유하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서도 당해비회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면허를 허여한다. ETSI회원 및 그의 제휴사에게는 ETSI 소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료이용이 허용된다.

8. 면허허여

8.1 면허허여에 대한 거부

8.1.1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아닌 주체가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허를 허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ETSI로 통지한 경우에 기술총회는 해당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을 설정하는데 실행가능한 대체기술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한다.

- 당해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것 그리고
- ETSI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

8.1.2 기술총회의 검토의견에 어떠한 실행가능한 대체기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준화작업은 중지되고 ETSI사무국장은 해당당사자 또는 주체에게 그들의 입장을 재고하도록 요청한다. 동당사자 또는 주체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면허허여의 거부를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주체는 ETSI사무국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ETSI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지 3월 이내에 당해지적재산권에 대한 면허허여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ETSI사무국장은 EC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기술총회의 의사록에서 발췌한 관련부분과 함께 동당사자 또는 주체의 이유서를 EC집행위원회로 송부한다.

8.2 면허이용의 불가능

표준과 관련하여 ETSI가 상기 제4.1조에 따른 제3자로부터의 면허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표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계속하기 위하여 ETSI 사무국장에게 제출된다.

- ① ETSI사무국장은 상기 제4.1조에 따른 면허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 ② ETSI사무국장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상기 제4.1조에 따

라 면허가 허여되기를 요청한다.

- ③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ETSI사무국장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9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때에는 ETSI사무국장은 기술총회에 이를 통보한다. 기술총회에서는 당해지적재산권이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표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표준을 관련기술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개인별 가중치를 두어 실시한다.
 - ④ 기술총회의 투표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동사안은 총회에 회부된다. 총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사안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EC 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아울러 총회는 적절한 회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상기 ④의 절차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총회는 EC당국에 EC조약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상기 ⑤절차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총회는 EC 집행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표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추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상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문제가 되는 표준의 구현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 8.3 ETSI사무국장은 ETSI에 의하여 승인된 표준화된 면허양식을 청구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9. 표준화 서류의 복제

ETSI의 회원(그의 제휴사 포함)은 ETSI에 의하여 생산된 표준에 관한 서류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무료로 복제할 수 있으나 이 복제본을 타인에게 배포할 수는 없다.

10. 법률과 규칙

본 정책은 프랑스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자국 및 초국가적인 법률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은 ETSI의 회원 어느 누구도 본 정책에 의하여 자국의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자국에 적용되는 초국가적인 법률이나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프랑스법률에 근거하지만 회원에게 적용되는 자국 또는 초국가적인 법률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당해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부과되는 의무 모두는 단지 계약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11. 정책결정

ETSI의 정관과 절차규정(RoP)에 따라 회원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책 구현과 관련된 결정은 그 어느것도 ETSI에 의하여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12. 협약위반

협약을 위반한 ETSI회원은 ETSI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ETSI 총회는 ETSI 정관에 따라 불이행한 ETSI회원에 취하게 될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3. 정의

고딕체로 표기된 본 정책상의 용어들은 부록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14. 정책의 존속기간 및 개발

ETSI와 그 회원들은 최종적인 지적재산권정책과 그 협약에 합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최종적인 지적재산권정책을 공식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그 채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되는 잠정

정책의 적용에 관한 총회의 평가와 필요한 경우에
현정책에 대한 수정이 포함된다.

현 정책은

- 1993년 4월 1일부터 최소한 2년동안 효력을 갖
게 되고,
- 총회의 회원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를
얻고, 국가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로
확정되지 않는 한은 상기 최소존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 회원별 가중투표에서 71%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수정되지 않는다.

<부록>

정의

1. 주된 법적 주체의 "제휴사(AFFILIATE)"라 함
은 소유 또는 관리통제가 지속되는 동안 다음의
관계에 있는 기타의 법적주체를 의미한다.

- 동 주된 법적주체를 직접 · 간접적으로 소유 또
는 관리하는 주체
- 동 주된 법적주체와 동일하게 직접 ·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주체
- 동 주된 법적주체에 의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되는 주체

이러한 제휴사의 관계는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존
속되는 한에 있어서 지속된다.

소유권이나 관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발행된 보통주자본 액면가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혹은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능을 수행하
는 자의 선출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
유한 경우
- 기타 다른 수단으로 이사 또는 총체적으로 관리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선출 또는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국가나 국가의 자치단체, 기타 공법에 의해 운영
되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나 국가의 자치단체,
기타 공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단체를 통해서만
주된 법적 주체에 연결되는 법적 주체는 제휴사
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위원회(COMMITTEE)"라 함은 모든 ETSI의
작업반(working party)이나 위원회(commit-
tee)를 의미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
mittees) 및 기술소위원회 (Sub-Technical
Committees), 프로젝트팀(Project Teams),
전문가그룹(rapporteur groups) 등이 포함된
다.

3.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라 함은 본 정책에 따라서 ETSI가 배포하는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허여에 관한 정보와 함
께 서명자 또는 그의 제휴자에게 직접 · 간접적
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본 정책의 제6조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4. "장비(EQUIPMENT)"라 함은 표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시스템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5. "방법(METHOD)"이라 함은 표준에 완전히 부
합되는 방법이나 운용을 의미한다.

6.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는 "필수적(ESSENTIAL)"
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준에
부합되는 장비나 방법을 생산 또는 판매, 대여,
기타의 처분, 수리, 사용,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
표준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관행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에 상업적인 이유
에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에서 가능하지 아니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표
준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써만 구현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모
든 지적재산권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7. "지적재산권(IPR)"이라 함은 실정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출원중인 것은 포함되나 상표권은 제외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치장, 비밀정보, 영업기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8. "제조(MANUFACTURE)"라 함은 Regulation(EEC) No 802/68 및 1318/71(On the common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origin of goods)의 원칙에 따라 표준적용지역에서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9. "회원(MEMBER)"이라 함은 ETSI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의미한다.
10. "당사자(PARTY)"라 함은 ETSI의 회원이거나 ETSI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협약을 ETSI에 제출하였고 그 이행서가 유효한 동안은 표준적용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법적 인격이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협약서상의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은 당사자와 그의 제휴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11. "정책(POLICY)"이라 함은 ETSI의 지적재산권정책을 의미한다.
12. 협약상의 "서명자(SIGATORY)"에 대한 언급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은 서명자와 그의 제휴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13. "표준(STANDARDS)"이라 함은 표준에 포함되는 선택사항 및 수정판을 포함하여 ETSI가 채택한 모든 표준을 의미하며 이에는 ETS(유럽전기통신표준), I-ETS(잠정유럽전기통신표준)와 NET의 일부, ETS·I-ETS 또는 TBR(Technical Basis for Regulation)을 근거로 작성되는 CRT(일반기술기준) 및 이상의 것들의 초안과 모든 회원이 이용가능한 기술규격이 포함된다. 그러나, NET 또는 CTR에

서 참조될 수도 있으나 ETSI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표준은 제외된다. ETSI협약의 목적에 맞추어 ETSI에 의하여 표준이 채택되었고 간주되는 시점은 당해표준의 기술규격이 모든 ETSI회원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 한다.

14. "표준적용지역(STANDARDS APPLICATION AREA)"이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모든 국가 그리고 협약의 제2조에 따라 당사자가 요청한 시점에 전기통신주관청이 ETSI의 회원인 국가들과 특정표준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 공인된 국가표준화단체가 공식적으로 해당표준을 채택하여 시행한 경우
 - 또는
 - 주요 전기통신망운용체가 해당표준을 따른 규격의 장비를 상당한 규모로 이미 조달하였거나 조달할 예정인 경우

표준적용지역내의 국가목록

Andorra, Alba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oslovak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Monaco, New Zealand, Norway,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umania, San Marino,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Vatican City, Yugoslavia.

15. "협약서(UNDERTAKING)"라 함은 부속서A에 상술된 협약서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1. 박기식, 이선화, "기술사유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공유의 표준화 전략", 월간정보통신시대, 1994.4.(주) 정보시대. pp.123-128.
2. 박기식, 이선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중심으로 -", 제 4회 ITU 교육 프로그램 강연 자료집, 1994.5.17. pp.93-107.
3. 이선화,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 1994.8. pp.26~35
4. 이선화, 정석호,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 TTA Journal 제 33호, 1994.8. pp. 66-76.
5. 石黒一憲, 情報通信 知的財産權의 國際的 視點, 國際書院, 동경, 1990
6. 石黒一憲, 知的財産權と 標準化-ETSI의 Patent policy-를めくる摩擦の構圖, ITU 研究, Vol.24 No.1.1994.
7. Nicholson, Ron and Roger Miselb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med Publishing Co.,1993.
8. Mark Shurmer and Gary L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A Fundamental Dilemm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10th Annual Conference, Sydney, Australia 3-6 July 1994.
9. Gerard Robin, "The European Perspective for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32 No.1. 1994.1. pp. 40-44.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92), 445 final, Brussel, 27 October 1992.
11. 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 Undertaking, 1993.

< 약어 >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CCH : Committee for Harmonization
 CEPT : European Conference for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CIR :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TT :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TR : Common Technical Regulation
 EC : European Communities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TS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	: European Union
I-ETS	: Interim-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NET	: Normes Europeennes de Telecommunications
RCR	: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RoP	: Rules of Procedure
TBR	: Technical Basis for Regulation
TBTA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AC	: Technical Recommendations Application Committee
TTC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 1)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는 타 기구들의 많은 비판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여겨지나 본 고에서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협약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2) 개인별 가중투표방식에 있어 가중치는 전기통신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부금(회비)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3) 국가별 가중투표방식에 있어서는, 비록 국가별 정부대표의 회비가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해도 반드시 이를 근거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 ETSI는 국가별 가중투표방식에 관한 특별한 원칙을 마련해 두지는 않고 있으며, 필요시 EU 각료회의나 CEN, CENELEC, TRAC과 같은 EU내 다른 기구들이 정해 둔 가중치를 고려하여 기술총회(TA: Technical Assembly)에서 정하게 된다.
- 4) ETSI 전체 회원에서 제조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르며, 사용자들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회원의 70% 정도에 이른다.
- 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92), 445 final, Brussel, 27 October 1992.
- 6) 그러나 사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사용상황'이 면허 조건에 있어서의 표준화기구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면허 공여 조건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7)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은 사실상 다른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지침(관련 원칙)보다도 강도가 높은 원칙으로 볼 수 있다.
- 8) 이 초안은 1993.3.18 제 15차 ETSI General Assembly에서 승인되어진 후, 동년 4월 9일과 7월 8일에 2차에 걸친 편집 관련 수정을 거친 바 있음.
- 9) ETSI회원들은 서명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ETSI를 탈퇴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서 의무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24개월 전에 서명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인 경우 회원탈퇴 없이는 협약서 의무를 종료시킬 수 없다.
- 10) ETSI의 역외국 혹은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취급때문에 지적재산권 정책 및 협약서에서의 '표준적용지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준적용지역은 EC, EFTA, 회원국, 동구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주관청이 ETSI 회원인 모든 국가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표준과 관련하여
 - i) 공인된 국가표준화기구가 정식으로 그 표준을 이미 채택하고 구현한 국가
 - ii) 주요한 전기통신망 운영자가 해당 표준에 따른 규격의 설비를 대규모로 이미 조달했거나 조달할 예정인 국가를 의미한다.

상세목록은 5절 참조.

- 11) 협약서의 서명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면허를 허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표준의 준비를 위하여 동 항목의 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한 일자로 부터 180일 이내에는 면허허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
- 12) 여기에서 비배타적 (non-exclusive) 이라 함은 그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해당 표준적용 지역 어디에서든지 표준에 따른 제조, 운용 등이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이라는 의미는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피면허자에게 허여된 면허조건들이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 (fair and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적권리의 보호와 표준화라는 공공목표가 균형있고 조화스럽게 되도록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13) 이는 ETSI의 RoP (Rules of Procedure) 규정에 따른 표준작업절차를 고려해보면 초기단계 임을 알 수 있다.
- 14) 본 절은 1993년 3월에 잠정채택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and Undertaking' 중 지면관계상 정책부분만을 수록하였음.

